

'최대 30만원'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,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

-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·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
...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
<사례로 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>

- A씨(서울시, 만41세)는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.
- A씨는 서울시 기준으로 청년(만 19세 이상, 만 39세 이하)이 아니기 때문
- 정부가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 및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하면서 오는 3월부터 A씨도 보증료 지원을 최대 30만원 받을 수 있게 된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(이하 보증료 지원사업)을 확대 시행한다.

○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, 연소득 5천만원(신혼부부 7천만원) 이하 청년층*을 대상으로 '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.

* 청년 연령은 시·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, 강원 만 45세 이하, 그 외 지역 만 39세 이하

○ '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, 소득 기준*과 대상 보증 범위**를 확대 시행한다.

* (소득 기준) 연소득 ①(청년)5천만원, ②(청년외)6천만원, ③(신혼부부)7.5천만원

** (대상 보증)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

□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.

○ 지자체 심사를 거쳐 **납부한 보증료의 90%**(최대 30만원)를 환급받을 수 있고, **청년·신혼부부는 100% 환급**(최대 30만원)이 가능하다.

* 작년 사업과의 **연속성 확보**를 위해 '24.1.1부터 '24.3.3에 **청년 또는 신혼부부**면서 **유효한 보증**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**납부한 보증료의 100%**를 환급(최대 30만원)받을 수 있다.

□ 한편,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**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**을 추진 중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“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,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	책임자	과 장	전성배 (044-201-3337)
		담당자	사무관	이상근 (044-201-4850)



참고**시·도 지자체 담당 부서 및 연락처**

지 자 체	부 서	연 락 처
서 울	주택정책과	02-2133-7277
인 천	주택정책과	032-440-4744
경 기	주택정책과	031-8008-3234
강 원	건축과	033-249-3464
부 산	청년정책담당관	051-888-4612
울 산	건축정책과	052-229-4414
경 남	건축주택과	055-211-4374
대 구	주택과	053-803-4613
경 북	청년정책과	054-880-2763
대 전	청년정책과	042-270-0832
충 북	건축문화과	043-220-4474
충 남	건축도시과	041-635-4655
세 종	청년정책담당관	044-300-6033
광 주	주택정책과	062-613-4872
전 남	건축개발과	061-286-7725
전 북	주택건축과	063-280-2365
제 주	주택토지과	064-710-4252